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라-2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

(A Study on Internet Business Policy)

2009. 12. 31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총괄책임자 : 이규정 연구위원(한국정보화진흥원)

참여연구원 : 차재필 선임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주윤경 주임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요 약 문

1. 제목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최종 연구개발 결과보고서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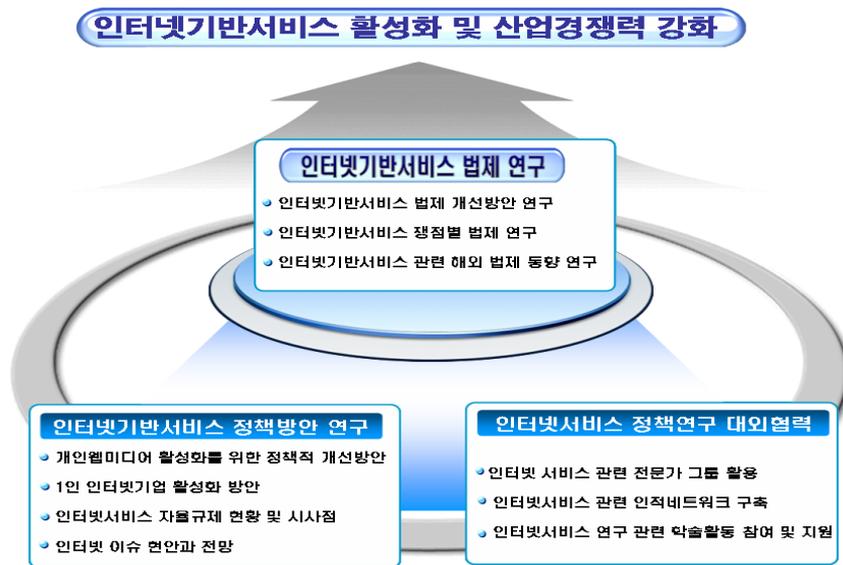
1990년대 단순 정보제공과 전자상거래 위주였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는 쌍방향·맞춤형·융복합의 다양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참여·공유·개방의 개념(Web2.0)에 기반한 UCC, 1인방송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보급으로 이용자 주도의 인터넷 이용문화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인터넷 산업의 시장규모가 24조 8,470억원에 이르는 등 인터넷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소 인터넷서비스 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와 대형 인터넷 기업에 대한 수요편중 및 신규서비스 개발 미흡 등은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가져온 어두운 단면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기업이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서비스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 인터넷의 다양한 역기능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비즈니스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시장 및 이용자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신규서비스의 원활한 창출과 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일반법적 근거의 제공과 인터넷서비스별 다수 법령 산재 등 규제 불균형과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듯 인터넷 비즈니스의 새로운 발전추세와 산업 동향에 맞는 정책개발 지원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인터넷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법정비에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터넷서비스 법제도 연구, 국내외 동향 분석 등 체계적인 법제도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밖에도 인터넷 관련 다양한 이슈의 현안 분석과 인터넷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 추진전략>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의 최종목표는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다. 따라서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창출 촉진과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성장동력화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에서는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외 인터넷서비스 관련 법제 동향 분석과 함께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공정경쟁시장 조성, 이용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내용규제 등에 관한 주요 법적 이슈와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는 선행연구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다양한 이슈 도출과 정책적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서 개인웹미디어, 1인 인터넷기업,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인터넷 이슈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원활한 인터넷서비스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을 적극 활용하였고 관련 산업계 실무자 및 학계 전문가와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포럼 및 인터넷 법·제도 포럼 등을 운영하여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와 ‘인터넷기반서비스 정책연구’ 및 ‘인터넷서비스 정책연구 대외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개 카테고리의 연구과제들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진행되었다.

4. 연구내용 및 결과

2009년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연구, 인터넷기반서비스 정책방안 연구, 인터넷서비스 정책연구 대외협력의 3개영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연구되었다.

□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연구

-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인터넷기반서비스 쟁점별 법제 연구
-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해외 법제 동향 연구

□ 인터넷기반서비스 정책방안 연구

- 개인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1인 인터넷기업 활성화 방안
-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 인터넷서비스 정책연구 대외협력

- 인터넷서비스 관련 전문가 그룹 활용
- 인터넷서비스 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 인터넷서비스 연구 관련 학술활동 참여 및 지원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정책개발 연구는 연구보고서, 이슈페이퍼, 자료집, 정책제안 및 반영 등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였다.

□ 연구보고서 목록(12권)

-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규제개선 방안연구
- 인터넷기반서비스 내용규제 제도개선 방안연구
-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인터넷기반서비스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영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독일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1인 인터넷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이슈페이퍼 목록(2권)

-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전문가가 진단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 자료집(2권)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 공청회

□ 정책제안 및 반영(2건/2건)

-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 방안 마련(제안 및 반영)
- 개인웹미디어 활성화 방안(제안 및 반영)

□ 논문 및 학술발표 건수(5건)

- 논문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모니터링의무의 법적 쟁점과 과제(이규정,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 제15집 제1호, 2009)
- 번역
 -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차재필, 경원법학 제2권 3호, 2009)
- 학술발표
 -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한국인터넷법학회, 미래정보사회 법적 과제와 대응, 2009.3)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방안(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2009.9)
 -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자율성 제고(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 공청회, 2009.12)

□ 대회협력(3건)

- 전문가그룹 운영
-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포럼
- 인터넷서비스 법·제도 포럼

5. 정책적 활용내용

이 연구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인터넷 관련 발전 방향 정립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및 신뢰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안)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도 정비 등에 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및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의 현안 분석 및 해외인터넷 법제 동향 연구 등 인터넷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의 적시성 및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 법제 정비 방안 연구, 인터넷 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적정 규제 수준 연구, 인터넷 관련 법제도 입법지원 등 인터넷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정책 기초를 반영한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추진으로 산업활성화와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의 적절한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의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Internet Business Polic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Since 1990s, as internet is commercially launched, there are dramatic changes were occurred in terms of socially and economically. In Korea, thanks to highly developed fast broadband internet network infrastructure, many innovative and experimental services has been tried for last 20 years such as search engines, chatting community, SNS, online game, collective web portals and so on. These kinds of 「internet based services」 have experienced many 'up' and 'down' on the roller coaster of internet economy, now this industry is, again, in the phase of 'stuck' which could be said, in other words, 'low level of competition', 'no innovation' and 'no more growing'. Therefore, it is time to introduce more systematic approach to stimulate this industry again to archive more balanced developing.

Also as rising of internet based services, there are many side effects such as 'defamation', 'phishing'. Those side effect are lowering the reliability of services and the number of users. Thu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sound market and user environment. Furthermore, there are many laws related each different internet based services are also barriers for development of internet economy.

Therefore, it is need to have newly developed legal framework for internet busines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study has been focus on reviewing legal system, related to internet based services to rein sustainable growth of internet business in the era of convergence.

To archive of the goals of this study, study of revising current laws which related to internet based services, write draft of new bill and analysis of current legal issues.

In addition to this, networking was another pillar of this study which is academia network who are working on Internet law and industry network who involved in internet based servic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 o Internet based services legal study
- o Internet based services policy development study
- o Internet based service networking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has analysed the legal issues into four different sectors, which are market, user protection, security and privacy, and content regulation. as result of analysis of those sectors, four reports of each sector were issued.

In terms of policy development, new way of stimulation of economy has been studied in terms of 'internet based 1 man firm'. Also the as personal web media, such as citizen journalism and blogs, the better policy implication has been suggested to govern this efficiently.

To have better picture of legal framework, he foreign internet related laws were studied. As result of this, U.S., UK, Germany and Japan were reviewed as cases.

Finally, collective result of those research above, internet the new legal framework draft for internet based services is came out.

While, to cross check this study results, many experts reviewed who are currently work and study in this field, which networked by running of a policy discussion forum.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o develop internet industry, it needs to open market more widely and supply more rooms for unexpected

emergence of converged services. Also unnecessary regulations on internet business should be removed for better freedom and stimulation of industry.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expected to be used by the government officers who are in developing legal framework and policy for developing national internet business.

6. Expectations

This study is aimed to have better internet policy to promote internet economy to supply more jobs. For this the internet based services has to be more reliable and easy to use. For this, competition has to be promoted to supply better quality of services as well. also market barrier has to be lowered as a minimum level.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e study will help to provide better internet policy and eventually it will lead promotion of internet economy eventually.

목 차

제1장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연구 1

제1절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1

1.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3.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2
4.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시안) 6

제2절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세부 법제 개선방안 연구 31

1.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규제개선 방안연구 31
2. 인터넷기반서비스 내용규제 제도개선 방안연구 33
3.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36
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38
5.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39

제3절 인터넷서비스 관련 해외 법제 동향 연구 41

1.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41
2. 영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43
3. 독일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50
4.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51

제2장 인터넷기반서비스 정책방안 연구 56

제1절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56

1. 개인 웹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56
2. 개인 웹미디어의 특징 56

3. 개인 웹미디어 관련 제도와 법률적 쟁점	57
4.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57
제2절 1인 인터넷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58
1. 연구배경 및 목적	58
2. 연구방법 및 내용	59
3. 연구결과 및 결론	59
제3절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61
1.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의 필요성	61
2.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의 정의 및 유형	62
3. 해외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유형 분석	62
4. 국내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유형 분석	63
5.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64
제4절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64
1. 전문가가 진단한 인터넷 비즈니스 이슈	64
2. 인터넷 5대 핵심 이슈 분석	66
3. 인터넷 5대 핵심 이슈 진단 및 전망	68
제3장 인터넷서비스 정책연구 대외협력	72
제1절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포럼 운영	72
1. 배경 및 목적	72
2. 포럼 구성 및 운영	72
3. 주요내용	72
제2절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	74
1. 배경 및 목적	74
2. 포럼 구성 및 운영	74

3. 주요내용	75
제3절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연구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76
1.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76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공청회 개최	80

Contents

Chapter 1. Internet based services legal study 1

Section 1. Internet based services legal reform study 1

Section 2. Depth legal issue study on Internet based services 31

Section 3. Study on overseas internet related legal systems 41

Chapter 2. Policy study on internet based services 56

Section 1. Policy recommendations on Personal web media promotion 56

Section 2. Internet based one-man-firm promotion strategy 58

Section 3. Current status of self-regulation on Internet based services 61

Section 4. Current internet issues and future forecast 64

Chapter 3. external cooperations on Internet based services

Policy Study 72

Section 1. Internet based services industry policy study forum 72

Section 2. Internet legal study forum 74

Section 3. Internet based services legal study seminars and public hearings 76

제1장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연구

제1절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1.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으며, 2008년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3,536만명, 이용률은 77.1%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매출규모는 27조 8,470억원에 이르고, UCC, 1인방송 등 참여·공유·개방의 개념(Web2.0)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보급으로 이용자 주도의 인터넷 이용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소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투자환경 악화와 신규 서비스 진출 미흡, 대형 인터넷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요의 편중 등의 문제점은 우리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잠재가치를 가진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성장 동력화 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관련 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균형적 발전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즉,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유효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창출과 시장진입을 위한 일반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시장 및 이용자 환경을 조성하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이용에 관한 공통의 규범기준을 제공하여 규제의 불균형과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이 연구의 범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 즉 인터넷기반 서비스로 하였다. 이에는 정보의 제공이나 재화의 거래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이러한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만, 물리적인 통신망을 설치·제공하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을 근간으로 하여 전기적 통신을 매개하거나 활용하는 서비스는 그 범주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효율적인 시장진입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완화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사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 발전을 위하여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준과 원활한 분쟁해결절차 등을 연구하였다.

3.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개발·제공·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시안)”을 도출하였다. 이 법률 시안은 총칙,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업무의 공정화,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분쟁의 해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경쟁촉진 및 발전,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개념

인터넷기반서비스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콘텐츠의 제공이나 재화의 거래 등과 같이 종래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비롯하여, 이러한 인터넷상의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인터넷기반서비스는 종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한다. 반면, 종래 전기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부터 구분되어, 인터넷기반서비스에는 물리적인 통신망을 설치·제공하는 서비스나 전기통신을 근간으로 하여 전기적 통신을 매개하거나 활용하는 서비스(기존의 음성정보제공서비스나 고도팩스서비스 등)는 제외된다.

나.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시장진입 요건 정립

현재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승인·등록, 신고, 지정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진입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인터넷 관련 사업자는 시장진입을 위해 대부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의 의무가 전제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확보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등록, 허가 등 보다 강한 진입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참여의 편리성과 자유 보장,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진입 요건의 완화와 통일이 요구된다. 특히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참여의 기준과 요건 등을 통일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전 개별법에 의해 공공성·안전성·신뢰성 등의 이유로 특별한 진입절차가 요구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기존의 시장진입 요건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장진입요건을 두지 않는 방안, 시장진입요건을 '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신고제'를 기본으로 하되 공공성·안전성·개방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경우에 '등록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업형태·규모의 다양성·가변성·규제완화 요구 등을 반영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자

율적 신고제를 하되 공공성·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특별히 고시하는 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업무의 공정화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사업자에 의해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는 사업자를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도 자체적인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전체적인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는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이용을 유도할 것이고,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혹은 현재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그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결국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이용관계의 명확화·공정화를 위하여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 이용자의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확인·정정 등 절차 마련 의무 부과,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사실 통지 및 계약체결 사실 확인, 이용기록의 보존 의무, 이용기록 및 개인정보 보존의 특례 인정, 검색광고와 일반정보의 구분 표시 의무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더 많은 이용을 유도할 것이고, 아직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혹은 현재 제공되고 있으나 아직 그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결국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호

인터넷기반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비대면성이라는 특징이 있어 오프라인 서비스에 비해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인터넷상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가 제공·공유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 등 인터넷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의 조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가 발전하고 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은 더욱 필요하며, 안전성·신뢰성 제고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이용자보호·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의 일반규정 적용 원칙하에 일부 특칙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 유해정보의 제한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잘못된 가격·품질 등 비교정보 제공 규제, 포털 등 정보제공매개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 매개에 대한 면책요건 명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강화를 위한 투자는 결국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마.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의 효율적·체계적 해결

인터넷의 발전은 기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낮은 시장 진입 비용으로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쉽게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인터넷 속에서 다양한 거래 활동이 진행되면서 인터넷을 둘러싼 법적 분쟁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종류 및 내용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인터넷상 분쟁 조정이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분쟁조정기구의 설립 등 인터넷 분쟁의 효율적·체계적 해결을 위한 법적 뒷

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한 통합된 일반적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적어도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of 통일된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이용자보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종합적·균형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성장동력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관련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개별 서비스별 입법은 소관부처 중심의 정책을 강화시켜 전체 인터넷서비스 산업의 종합적·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정책지원기능의 정립, 인터넷발전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4.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시안)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제공과 이용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기반서비스”라 함은 명칭이나 서비스의 방식을 불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 재화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매개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원격제공 등을 통하여 업

무를 지원하는 서비스와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결제·인증·정보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인터넷접속서비스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신고사업자”라 함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부의 책무 등)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업무의 공정화

제5조 (사업자 및 서비스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사업자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사업자 신고번호(신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의 체결(서비스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가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건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명칭·종류 및 내용
3.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이용요금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 필요한 서식 등에 관한 사항
6.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증과 그 이용요금 환불의 조건 및 절차
7.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8. 이용자피해보상, 인터넷기반서비스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9.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에 관한 약관
10. 그 밖에 이용자의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이용조건 또는 이용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자의 표시·광고 및 고지의 구체적 형식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 (조작실수 등의 방지)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시점 또는 청약에 앞서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의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사실의 통지 등) ①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전자문서의 송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결제업자등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요금의 지급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체결의 확인) 사업자는 이용자가 상호·연락처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이용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이용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이용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 등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보존하는 이용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용기록의 열람·보존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업자의 표시·광고) ① 사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검색서비스(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입력한 특정한 기호·단어·문장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기호·단어·문장 등과 관련된 글·그림·동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보검색결과 중 검색광고(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입력된 검색어에 연동하여 사전에 등록된 광고문구 또는 광고대상인 홈페이지의 인터넷주소를 노출해 주는 정보의 제공행위를 말한다)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위한 정보검색서비스는 제외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장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호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등)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보호,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에 있어서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12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금지) ①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부는 이용자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리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하는 때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로 본다.

제14조 (정보보호기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에게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건강정보·생체정보·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지원 등) ① 사업자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한 제공 및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기능, 설치·이용 및 제거 방법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의 제거를 원할 경우에 이를 용이하게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청소년유해정보의 제한)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접속을 연령에 따라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잘못된 비교정보의 제공 금지)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품질·기능 등에 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금품 등의 수수를 통하여 잘못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정보의 정정청구 등)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여 명예·신용 훼손, 사생활 침해 등 권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반론의 게시(이하 “정정등”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등의 대상인 정보내용이 정보제공 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등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삭제하거나 반론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정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정정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등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등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등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 ⑤ 정정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사업자는 제33조에 따른 인터넷기반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자의 책임 제한)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이 조에서 “불법정보”라 한다)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같은 법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

행 등을 통하여 당해 정보의 제공·유통 또는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자가 그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 또는 불법정보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정보의 제공·유통 또는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관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따른 사업자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제20조(저장정보의 보호) ①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저장·관리하는 글·그림·동영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저장정보”라 한다)를 보관하는 사업자(이하 “저장정보보관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저장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저장정보보관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저장정보 보관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일부터 30일 동안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 관한 기록
2.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제21조 (저장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① 저장정보보관서비스사업자로서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저장정보를 이용·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와의 보증보험계약
 3.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공제조합 또는 공제단체와의 공제계약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정보검색결과의 조작 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결과가 제공되는 위치 등(이하 “정보검색결과”라 한다)을 변경·삭제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造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위한 정보검색서비스는 제외한다.

②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일일평균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검색결과가 조작(造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타인의 인터넷광고 비용 증가행위 금지) 누구든지 광고주의 광고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인력을 이용하여 광고에 대한 접속건수 증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자율규제) 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해당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그 소속 사업자의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간의 존엄성·가치 보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법령의 준수,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제한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및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을 제정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율규약의 내용 및 시행방법·절차 등의 적법성·적절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율규약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 제정·시행 및 이행정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사업자단체를 자율규제우수사업자단체로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규제우수사업자단체로 확인받은 사업자단체에 속하는 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율규제우수사업자단체 확인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우수사업자에게는 자율규약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이용자 본인 확인의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무를 면제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분쟁의 해결

제25조 (인터넷기반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 ①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또는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기반서비스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언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분쟁조정절차) ①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분쟁조정기구가 심의·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이관하고 관련 자료를 이송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4.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6.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
7.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8.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0. 그 밖에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 기구

③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쟁조정기구가 사건을 당해 분쟁조정기구의 법정 심의·조정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심의·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분쟁조정기구의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분쟁의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하고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 (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당사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 (조정 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조정 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정 비용)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비밀 유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경쟁촉진 및 발전

제33조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촉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3.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5.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8.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 및 기술동향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공정경쟁의 촉진)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에

서의 지배력이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규제의 정비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에 다툼이 있거나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률 규정이 충돌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정비 또는 사업개시 및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의 결정 권고를 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 법에 의한 사업의 개시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인정된 때에는 제45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한 제공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거래인증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거부 등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제품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사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표준화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인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성, 이용자의 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기반서비스의 기술적·관리적 운영이 우수한 경우에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인증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운영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⑤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신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창업의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기술 등에 관한 정보, 자금 및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3조 (국제협력)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 (인터넷기반서비스진흥센터)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터넷기반서비스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2.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인증
3.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표준화
4. 교육·훈련 및 전문기술개발 지원
5. 인터넷기반서비스 통계 등 실태조사
6. 국제협력의 추진 및 지원
7.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개선 지원
8. 그 밖에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진흥센터의 조직·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공공성·안전성 그밖의 특성,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신고사업자가 영위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신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이 있는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 ① 신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9조 (사업의 폐지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3.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48조에 따라 휴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5. 제5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는 처분을 받은 것과 같은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신고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
2. 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4. 차입금 그 밖에 수입금

③ 기금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의 지원을 위하여 운용한다.

1. 인터넷기반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인터넷기반서비스관련 인력양성, 창업지원 그 밖에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4. 인터넷기반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사업
 5. 인터넷 중독방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교육 및 홍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④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터넷기반서비스 연구개발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시정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과법」이나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사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또는 금품 등의 수수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품질·기능 등에 관한 잘못된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현저히 방해한 때
3.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방해한 때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한 때
5. 이용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용요금을 청구한 때
6.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7. 사고 등에 의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사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5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에 따른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보급·활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
4. 제4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56조 (벌칙)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온라인광고주의 온라인광고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수단 또는 인력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보처리를 하게 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상호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 조건에 관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제5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2항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색광고와 검색광고가 아닌 것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우수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4조제5항의 자율규제우수사업자단체 확인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
5.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로 인증받지 아니하고 제39조제5항의 우수인터넷기반서비스 인증의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홍보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홍보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7.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5조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
8. 제4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자료제출을 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요금의 전자적 지급 사실의 통지, 이용요금의 지급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에 위반하여 이용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45조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 사업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파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사업자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수집·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번호는 이 법 시행 후 수집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를 “전기통신사업자 및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로 한다.

제2절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세부 법제 개선방안 연구

1.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의 규제개선 방안연구

가.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인터넷 관련 법제는 서비스별 규율체제로 여러 개별법들이 존재하여 인터넷 서비스 전체적 차원에서 규제의 일관성·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유형의 서비스 간에도 규제의 내용 및 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간의 관계 설정이 미흡하여 법 적용시 문제 발생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전체적인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이용과 관련된 규제의 합리화와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이 보고서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의 다양한 규제 이슈들 중에서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인터넷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 상호간 및 사업자들과 이용자들 간의 경쟁 및 공정거래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요 이슈들 중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향후 제정 논의될 다음의 내용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 방안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규제 방안
- 불공정거래행위(금지행위) 규제 방안
-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방안
-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

또한,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들을 진입규제, 소유규제, 영업·거래 규제 및 사회적 규제의 네 가지로 나누어 검토를 진행 하였다.

다. 연구결과

인터넷 관련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에 지나친 진입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법률에서의 진입 규제 조항들과 조화를 맞추어 서비스별 진입규제 여부 및 정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사업에 있어서도 다른 미디어 관련 산업에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다른 미디어 관련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소유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들이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특칙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터넷 기반의 시청각 미디어(audiovisual media)에 대하여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정보를 잘 취득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할 의무, 정보와 관련한 광고계약의 존재를 분명히 고지할 의무 및 콘텐츠에 부과되는 광고에 대한 수익을 적정하게 배분할 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유형을 고려하여 거래거절 금지, 차별금지, 불공정 수익배분 금지, 7우월적 지위남용 금지 등을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의 이익저해 행위유형에 대한 규제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에서도 사회적 규제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상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라. 기대효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네 가지 규제별 주요 이슈를 검토하여 논점 정리, 타 법률과의 비교 분석 및 관련법 제정시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에 대한 법률 제정 논의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기반서비스 시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개선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기반 사업 활성화 및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인터넷기반서비스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기반서비스 내용규제 제도개선 방안연구

가. 연구의 목적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전과 그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음란정보, 폭력물, 자살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규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법·유해정보의 범람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¹⁾ 이 때문에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내용

규제에 대한 요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하여 내용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의 부인하고 있는 논의는 없어 보인다. 즉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인터넷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규제를 택할 것이냐이다.”²⁾ 하지만, 현행의 법률구조에서는 위법정보와 유해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이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경계를 확정지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통적인 분야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명백히 불법정보와 위법정보로 인식되어지는 행위유형의 콘텐츠들을 어떻게 규율함으로써 건전하고 발전적인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육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에 중점을 두고자한다.

나. 연구의 방법

이에 따라 우선 제2장에서는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의 현행법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규율내용의 문제점과 내용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현행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규율방향으로서 원칙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콘텐츠규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불법정보, 유해정보의 규제범위와 규제수단의 적정성확보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방안으로서 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규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유해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건강유해정보나 환경침해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만 인터넷규제의 방향과 관련한 분야는 전술한 바처럼 기존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원론적인 논의가 될 부분은 배제하고 현재 다양한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외국의 법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논리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회의(FGI) 등을 실시하였다.

1) 정 완,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와 자율, 행사정책연구, 2001, p.255,

2) Sunstein, Cass R. Republic.com.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128

다. 연구결과

음란물에 청소년가상묘사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외설물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유해정보를 일반유해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를 구별하여 일반유해정보에 자살 등을 조장하거나 반인륜적 범죄 등을 조장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고 있으나 수없이 대량생산되는 청소년유해정보를 규율하는 것이 현행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는 불가능하므로 선진국의 핫라인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유해정보나 불법정보를 확인하는 사전적 조치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업적표현과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신뢰성이 크고 허위정보 등에 의한 피해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적용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 등에 명백히 침해가 되는 정보나 청소년 등에게 흡연 등을 조장하는 정보를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고 자율규제기구에 의한 자율적 심의기준에 의하여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육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산업을 행하기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우수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자율규제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단체의 자율성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정한 기준을 국가가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령에 그 자율기준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분석과 불법유해정보의 구별은 현재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의 혼동성을 제거함으로써 명확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사업자들에게 예
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현행의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반인륜적 범죄나 자살정보 등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불법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업자에게는 자신의 역할과 행위범주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자율규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의 책임을 통한 시장의 자정기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처벌중심의 법규정이 아니
라 예방중심의 법제도를 심화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면책
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음란정보의 범주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가상묘사음란물 및 청소
년이용외설물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성의 대상으로 하는 범
죄행위에 대한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인터넷 이용의 확산으로 이용자의 편익증대 및 이용자보호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법의 정
합성이나 체계성이 상당한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라는 주제 하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현행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
선방안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러한 목적을 두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이용자의 지위는 무
엇인지 살펴 본 후 이용자보호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인터
넷 이용자보호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이슈를 공정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단계의 의무, 계약이행단계의 의무, 사업수행 공통사항, 개별서비스유형별 이슈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결과 그동안 단편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왔던 개별 이슈들을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20여 가지의 이슈 현안을 면밀히 검토 할 수 있었다.

또 이슈화 된 배경과 현행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슈가 실제 문제가 되는지의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타법의 개정방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라.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이용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초기 연구이며,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인 법제 개선방안 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마. 기대효과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역기능으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여 인터넷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거시적인 법제도 개선 차원에서의 심층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4.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에 비례하여 증대하고 있는 정보적 역기능현상인 개인 정보 관련 권리침해와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는 인터넷의 정보처리기술과 그 속도 및 용량의 발달로 인하여 위협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 국가 등 행정주체의 책무로 설정될 수 있고 규제법정주의에 따른 법령상의 근거로써 규제적 법집행의 순연성을 강구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연구는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의 개념부터 인터넷기반서비스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현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운영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오남용, 주민등록번호의 과다 수집,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 증대, 침해유형의 고도화에 따른 침해예방 및 신속한 조치, 개인정보자동수집프로그램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이슈별로 도출하였다.

다. 연구개발 결과

현행 인터넷기반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관계법령의 규율체계 분석 결과 인터넷기반서비스 전체, 그리고 분야별 인터넷서비스(정보제공서비스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문제점 및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통신, 방송 융합 등 인터넷서비스 기술적·환경적 발전이 정보통신망법에 미치는 영향, 또 그로 인해 제기되는 새로운 정보보호 이슈를 제기하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의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이슈를 분석하여 그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현행 규제의 분석 및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라.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이야기 할 때 늘 대두 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총체적인 흐름과 이슈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자 및 정책입안자 등에게 유용한 기초·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마. 기대효과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단일법을 마련할 수 있는 분야별 단초를 조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밖에 인터넷서비스의 법적 규율에 필요한 시의 적절한 대응책을 법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 관련 법제의 기틀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가.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뛰어난 IT인프라와 정보사회의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인터넷 시대의 선두 국가가 되었으며, 날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프라 및 기술은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는데 일조하였으며, 인터넷 산업의 시장규모가 무려 27조 8,47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3,536만명으로 국민의 77.1%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등 인터넷 이용은 날마다 확산되고 서비스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오랜 경기불황의 여파로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던 작년 우리나라 전

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629조 9,6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07년에 비하여 113조 4,530억원(22.2%)이 증가한 수준이며 계속적으로 인터넷 전자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함께 전자결제 서비스도 활성화·다양화 되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콘텐츠 등)의 소액결제가 증가하면서 휴대폰, 유선전화를 통한 '통신과금서비스'가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통신과금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이용자를 기망하는 행위, 불합리한 자동계약 연장 등 다양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행 법률의 문제점 제기 및 개정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터넷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나.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이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 즉 유선전화 혹은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결제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슈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인터넷 이용과 전자결제의 확산 배경 및 통신과금서비스의 시장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정의의 구체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등록제도의 정비,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설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제도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다. 연구결과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연구결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통신과금서비스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라. 기대효과

이 연구는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기본적인 시장구조·구성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향후 건전하고 안전한 통신과금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이며,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하여 많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믿고 이용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인터넷서비스 관련 해외 법제 동향 연구

1.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체계의 특징 및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전반적인 미국의 인터넷 관련 입법의 기본적인 태도를 알아보고 인터넷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의 종류를 개괄하여 조사를 진행 하였다.

미국의 인터넷관련 법제에 대하여 이슈별로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미국 인터넷관련 법제의 동향과 법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법령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율 모습을 알아 볼 수 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미국은 그 특성상 연방과 주로 나뉘어 인터넷 관련 법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주법은 각 주마다 규제를 하고 있어 방대한 범위를 갖고 있기에 이 연구에

서는 주로 연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인터넷관련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일반적인 특징 분석과 함께 인터넷관련 법제의 발달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미국의 인터넷관련 법제의 이슈를 크게 시장규제, 이용자보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내용규제로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법제들을 살펴봄에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한 이슈별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법령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 연구결과

미국은 커먼로를 바탕으로 하는 불문법 국가로서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성문법 국가보다 입법적인 대응이 빠른 편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비롯 인터넷 내용 규제, 디지털 지적 재산권 보호 상업적 정보 전송 규제, 인터넷 침해 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한 법제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자율규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터넷과 관련하여 컴퓨터범죄, 사이버안보, 전자적감시, 프라이버시보호, 상업정보전송규제, 인터넷내용규제, 지적재산보호 등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크게 나누면 시장규제, 이용자보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내용규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시장규제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시장진입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장의 진입을 억제하는 요소를 금지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들은 크게 스팸규제, 이용자보호, 소비자보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별칙 규정을 함께 두면서 상업적 스팸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연방차원에서 국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이버상에서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내용규제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규제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목적으로 아동을 위한 내용규제 법제를 마련하였으며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동보호를 위해 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영역별로 세분화된 개별법을 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대응만을 하고 있으며 판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점차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의 책임을 증대시키고 이용자를 보호를 확대하고 있다.

2. 영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의 기술발전이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을 초래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이원적 구분을 전제로 발전하였던 기존의 법제들 역시 융합환경에 적합한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EU의 여러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주도적으로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법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노력은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동법은 방송과 통신의 규제를 단행법으로 통합한 통합법이며 이른바 수평규제를 원칙으로서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규제기관의 통합도 이루어져 OFCOM이 통합규제관청으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체제의 개편은 모든 네트워크에 단일규제체계를 적용하고 통신과 방송의 규제형평성을 제고하며, 역무통합을 통해 시장획정 제도를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관련 규제체제의 변모를 선도하고 있는 영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를 개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정책이 추구하여야 할 기본목표와 당해 목표달성을 위한 적합한 법적 수단들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인터넷관련 법제를 시장규제, 이용자보호,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규제의 4가지 영역에 걸쳐 살펴보고 시장규제는 다시 진입규제 및 공정경쟁이라는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고찰한다. 서비스의 융합화, 통신서비

3) 염용섭·김형찬,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이원우 편, 방송통신법연구 V, 경인문화사 2008, 21면.

스의 광대역화 등 기술발전을 적극 진흥하고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진입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규제가 무차별적으로 완화될 경우 결합이나 융합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많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진 거대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공정경쟁규제제도는 통합환경으로 말미암은 독과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 이처럼 경쟁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진입)규제완화와 (독과점)규제강화에 관하여는 먼저 영국의 국내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EU의 경쟁법의 기본틀을 살펴보기로 한다. 뒤이어 이러한 EU법의 기본입장에 토대하여 전개되고 있는, 경쟁제한적 합의금지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라는 공정경쟁의 두 가지 영역에 관한 영국의 법제를 살펴본다.

영국의 소비자보호법제 역시 대체적으로 EU의 각종 지침들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기술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법령 규정들은 대개 상품판매 및 공급에 관한 입법들이나 불공정 거래조건 혹은 상판행에 관한 입법들,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실현에 관한 입법들, 혹은 원격지 거래 및 전자상거래 계약에 관한 입법들에 자리 잡고 있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암호화, 컴퓨터 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영국의 법제를 개관하는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EU의 각종 지침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영국의 국내법이 정비되고 있으므로 영국의 법제에 앞서 간략하게 EU의 관련지침을 살펴보기로 한다.

콘텐츠 규제법제와 관련하여서는 음란물, 도박, 광고 및 금융서비스의 4가지 영역에 걸쳐 현행 법령의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인터넷 영역에서의 규제가 기본적으로는 자율규제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하였던만큼 공적 규제와 더불어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에 관한 영국의 논의 현황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 연구결과

1) 시장규제

과학기술차원에 있어서 방송통신의 융합현상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2003년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기존의 이원적 법제를 허물고 이른바 수평적 규제를 도입하면서 통합규제관청인 OFCOM을 창설한 점에 있는데, 통신시장의 진입 규제에 있어서는 시장진입장벽을 제거하여 IP산업 및 인터넷기반 전자통신산업이 융성하도록 하는 데 동법의 지향점이 두어지게 되었다. 한편 통신시장에 대해서는 2003년 통신법상의 규제 이외에 일반 경쟁법상의 규제도 적용되는데 이처럼 통신영역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반경쟁적 합의금지 등의 공정경쟁규제에 관해서는 2003년 통신법상의 수권에 의해 OFCOM이 공정경쟁에 관한 일반규제기관인 OFT와 더불어 경합적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영국에 있어서 기존의 방송규제는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방송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방송의 콘텐츠의 규제에 중점이 있었다. 기존의 방송관련 규제법으로 주요한 것은 Broadcasting Acts 1990 and 1996인바, 1996년 방송법의 주된 목적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에 필요한 입법적 틀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었다. 1996년 방송법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더 나아가 2003년 통신법에 방송에 관한 규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미디어와 방송에 대해 중요한 규제상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방송에 대한 많은 특허요건들을 완화함으로써 전자통신망(ECN) 및 전자통신서비스(ECS)규제에 관한 체제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기 위함이다. 2003년 통신법에서는 OFCOM이 기존의 방송관련 규제기구, 즉 ITC, RA, BSC의 기능의 대부분을 이양받도록 하고 있으며 콘텐츠와 관련된 OFCOM의 기능은 휘하의 콘텐츠 위원회(Content Board)에 위임되어 있다. (법 12, 13조) 이러한 기존의 방송규제의 틀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Communications Act 2003 하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도 특허요건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 소비자보호법제

인터넷 상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정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EU차원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논의의 중심은 인터넷맥락에서 소비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권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로 부터 점차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

로 집행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즉 효과적인 법집행에 대한 관심이 현 EU 소비자보호정책의 근본적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있다. EU 차원에서는 B2C계약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비양심적인 계약조건에 대해 규제하는 등의 모습으로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EU 차원의 소비자보호법제에 조응하여 영국의 소비자보호법제도 대체적으로 EU의 각종 지침들에 조화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기술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직접 관련되는 영국의 법령으로는 상품판매 및 공급에 관한 법령 (Sales of Goods Act 1977 ;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ct 1982 ; Sale and Supply of Goods to Consumers Regulations 2002), 불공정 거래조건 혹은 상관행에 관한 법령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실현에 관한 법령(Enterprise Act 2002), 및 원격지 거래 및 전자상거래 계약에 관한 입법들(Consumer Protection Distance Selling Regulation 2000 ; Eletronic Commerce(EC Directive) Regulation 2002) 등이 있다.

3)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암호화 기술과 관련한 영국의 입법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같은 암호화상품의 거래를 규율하는 영역이고 둘째는 예컨대 전자서명키의 인증처럼 암호기능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영역이며 셋째는 행정당국이 암호화키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에 관한 영역이다. 암호화상품 거래규제와 관련하여서는 2002년에 수출통제법(Export Control Act 2002)이 제정된 바 있는데 동법은 암호화상품과 소프트웨어를 영국으로부터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함과 더불어 그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에 관한 법령들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업과 소비자간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초기에 엄격한 규제로 흘렀던 추세가 현재로서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영국의 규제상황은 유럽내에서도 가장 느슨한 편이어서 영국에서는 인증서비스제공자가 영업을 하기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영업 이후 신고의무도 없으나 다만 2002년 전자서명에 관한 규율(Electronic Signatures

Regulations 2002)에서는 무역및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에 대해 일정한 인증서를 발하는 인증서비스제공자들로써 동 장관이 인식하고 있는 자들에 관한 등록부(register)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로 영국정부가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2000년 전자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제정과정에서 격화되었는데 본래 제안되었던 키에스크로 기법(key escrow scheme)은 산업계, 인권운동단체 및 유럽집행위(European Commission)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키에스크로 기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정이 '2000년 조사권의 규제에 관한 법 시행규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제3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0년 컴퓨터 남용법(Computer Misuse Act 1990)은 컴퓨터 시스템에 허락받지 않고 접근하는 행태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주로 전통적인 컴퓨터 해커들의 행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바이러스유포와 같은, 보다 넓은 범주의 행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이 서비스거부(DoS)공격 같은 행태를 적절히 저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자 2001년 사이버범죄 조약(Cybercrime Convention)과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동법은 2006년 경찰 및 정의법(Police and Justice Act 2006)을 통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법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지침에 따라 1998년 제정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이다. 동법은 Schedule 1에서 총 8개의 정보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획득 및 처리(fair and lawful obtaining and processing)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보처리가 공정하려면 정보의 원천이 오도적이지 않아야 하며 정보컨트롤러의 신원을 밝혀야 하고 정보사용 혹은 공개의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원칙은 특정적이고 합법적인 목적(specified and lawful purposes)원칙이다. 이는 개인정보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획득되어야 하며 당해 목적과 양립되지 않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장래에 처리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3,4, 및 5원칙은 적절성 (adequacy), 관련성 (relevance), 최신성 및 보유기간(up-to-dateness and period of retention)에 관한 원칙이다. 제6원칙은 정보주체의 권리(rights of data subjects)에 관한 원칙인데 이는 동법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특정 권리들, 즉 접근권 및 특정 처리에 대한 반

대권에 조화되게끔 개인정보가 처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처리에도 반대할 수 있다. 제7원칙은 보안 (security)에 관한 원칙으로서 이는 허용되지 않는 혹은 불법적인 개인정보처리 및 개인정보의 우연한 손실 혹은 파괴 혹은 손상에 대하여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가 취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제8원칙은 국경간 정보흐름 (transborder data flows)에 관한 원칙으로서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한 국가 혹은 EEA 외의 지역으로 전송되어서는 안되나 다만 당해 국가 혹은 당해 지역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명백한 예외규정들에 대해서는 1998년법 Schedule 4에서 규정하고 있다.

4) 콘텐츠 규제법제

콘텐츠규제의 경우 인터넷기반활동을 일종의 방송으로 보아서 기존의 방송법제가 취하고 있는 엄격한 콘텐츠 규제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으나 인터넷에는 주파수대의 제한이 없고 그 무한한 규모와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방송법제상의 콘텐츠 규제는 인터넷환경에는 적절치 아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음란물 콘텐츠에 관하여는 1959년 음란물공표법 (Obscene Publication Act 1959)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며 그 밖에 1990년 방송법 (Broadcasting Act 1990)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전송에 대하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포르노에 관해서는 1978년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이 적용된다.

영국에 있어서 광고는 대개 자발적인 지침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광고를 규제하는 수많은 법령들도 존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오도적 광고에 관해서는 많은 형사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는데 술광고, 약품광고 및 금융상품및서비스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또한 상업적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흥행물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EC의 전자상거래지침(Electronic Commerce Directive)와 원거리판매지침(Distance Selling Directive)이 적용된다.

인터넷 내지 원격지도박과 관련하여 2005년 제정된 도박법(Gambling Act)에서는 그것을 금지하기 보다는 규제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때의 원격성에는 인터넷,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및 장래 발전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유형의 전자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원격지도박과 관련한 규제의 구조는 2005년 법 33조, 즉 도박장비제공죄에 관한 규정 및 동법의 지역적 효력범위에 관한 34조에 토대하고 있다. 영국에 기반을 둔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기 원하는 원격지도박장운영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격지 도박장비의 일부라도 영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005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는 인터넷상황에 매우 이상적으로 잘 어울리는 서비스 이기는 하지만 다른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인터넷상의 금융서비스 콘텐츠에 대하여 매우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서는 일련의 금융서비스제공관련 행위들을 규제대상으로 정하여 금융서비스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부여하는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당해 규제대상인 활동들을 수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금지의 위배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이라는 형사적 책임이 수반될 뿐 아니라 민사법적 측면에서도 허가받지 아니한 자와 소비자와의 계약은 무효로서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라. 향후 과제에 대한 건의

이상과 같이 영국의 인터넷 법제를 시장규제, 소비자보호법제,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법제, 콘텐츠 규제법제로 살펴보았다. 지난 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보편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의 사용은 짧은 시간안에 인간의 삶의 모습과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그로부터 유래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발현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인간의 행태들에 대하여 규제 혹은 장려목적의 설정, 그 규제 혹은 장려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채택문제를 둘러싼 국가공동체와 시민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의 협동노력을 영국의 법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차후로는 각 세부영역에 있어서 법제들이 구체적 현실에 여하히 적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당해 영역의 행정 결정례나 행정심판례, 더 나아가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공적 주체에 의한 규제가 아닌 시장

의 자율적 규제가 특히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율규제의 현황과 자율규제의 제도적 뒷받침에 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3. 독일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독일의 인터넷 관련 법체계의 특징 및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기본적인 입법형태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 법제도적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독일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들을 파악하여 그 개념과 적용범위 등을 시장, 이용자보호, 정보보호 및 콘텐츠 규제의 4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 연구결과

연구의 결과로 독일의 법률들 중 아래 4부분에 관련된 법제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장규제 관련법은 '통신미디어법'과 '통신법'이 있으며 시장규제절차, 접속규제 및 요금규제 등을 담당
- 이용자보호에 관련된 법은 '민법'과 '통신법'에 관련 내용이 존재하며 이들 중 인터넷 관련 부분은 따로 일괄 묶어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관련된 조문을 찾아서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법제에는 '연방정보보호법'과 '통신법', '통신미디어법'이 관련되어 있음

- 콘텐츠 규제에 관한 부분에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미디어보호에 관한 주
간협약’등이 관련된 법률이며 주요 내용은 통신미디어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운영 주체, 청소년 유해목록 등급표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심의등급 표
시의무 등과 자율규제기구에 관련된 감독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라. 향후 과제에 대한 건의

독일의 인터넷에 관련된 법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독일법의 특성을 잘 알
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법제는 미국이나 영국의 커먼로 적인 성격이 아
님에도 주별로 법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등 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만약 도입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
해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4.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이 보고서는 일본의 인터넷 관련법률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특히
인터넷상의 시장규제, 이용자보호, 보안 및 개인정보, 콘텐츠 규제 등에 관한 주
제별 법제 분석을 통하여 일본의 인터넷 법제의 특성 및 규율원칙 등의 시사점
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법제 정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미 인터넷 세계는 현실 사회와 동일하게 성장한 가상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는 종래의 현실 세계만을 상정하는 법률의 단편적인 법 정비로부터 가능한
조속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세계의 법적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률
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은 세계 각국에서도 동일하며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을 가진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보고서는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률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시장규제”, “이용자보호”, “보안 및 개인정보”, 콘텐츠 규제“에 관련한 인터넷 이슈별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최근 일본의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과 규제정책 등을 분석하는 것을 그 범위로 한다.

다. 연구결과

최근 일본에서는 총무성 주관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현행의 통신·방송 관련 법률의 단일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정보통신법」의 제정으로 일본 인터넷 법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 본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법제로서 그 법안이 2006년 8월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의 중간보고에서 제창되었다. 일본의 인터넷 법제 및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인터넷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신문협회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정보규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터넷이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으로 규제의 영역 밖에 있다고 주장되던 때도 있으나 이미 현실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현실세계와 관련된 규제수단이 이용되게 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규제 방법과 수단은 현실세계보다 더 과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기본적인 인터넷 세계의 자율규제 가능성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인터넷 세계에 대한 전반적 혹은 개별적 규제에 있어 가능한 한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방식을 조심스럽게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슈별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내용인 “I.시장규제”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분류와 사업자 규율체계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전기통신사업관계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통하여 전

기통신사업을 규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에의 진입과 퇴출, 전기통신설비, 토지 등의 사용 등에 관한 규율이 정해져 있다. 또 독점금지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의 공정 및 자유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독점금지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관계를 둘러싼 사업자가 무용한 혼란이나 부담을 생기게 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내용인 “Ⅱ.이용자보호”에서는 이용자보호에 관련된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였다. 사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최우선사항으로 생각하여 대처하여야 하며 이는 인터넷의 건전한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먼저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하는 광고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에 의한 일반적인 규율외에 「전기통신 서비스의 광고 표시에 관한 자주기준 및 가이드라인(電気通信サービスの廣告表示に関する自主基準及びガイドライン)」(자주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 그 밖에 통신요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 계약체결시 설명의무, 계약체결 후 대응, 고충처리와 상담체제에 관한 규제들이 각각의 법률이나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보호 관점에서는 필터링, labeling 등의 보급과 촉진에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위법·유해정보 필터링에 대해서 필터링 소프트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유해 사이트에의 액세스를 이용자 측에서 자주적으로 제한하거나, 필터링이 이용되는 인터넷상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응한 등급 기준의 책정이나 민간 기업 등과의 협력 아래에서 보급 계발을 진척시키고 안심하고 안전한 인터넷의 이용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내용인 “Ⅲ. 인터넷과 정보보안”분야에서는 일본도 인터넷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보보안 관련법을 정보시스템 혹은 네트워크를 나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자유로운 유통과 보호에 배려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법률이 존재한다. 먼저 IT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비밀준수의무 관련규정으로서 일본 형법, 변호사법 등 많은 법률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비밀준수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현재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섞인 정보에 대하여

자유로운 유통과 보호에 배려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개별분야에서 다수 제정하고 있다. 이상 각 법률은 전체로서 정보보안관련 법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기본법 및 일반법 관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정보보안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IT기본법도 일부 시큐리티 관련을 정하고 있는데 그친다. 일본도 개별법대응에 더하여 2002년 OECD개정 가이드라인이라는 ‘시큐리티 문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및 ‘개인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 책임’의 이념을 실현하는 기본법, 일반법의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하여 적어도, ‘정보보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네 번째 연구내용인 “IV.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일본은 일반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그 내용에 있어 민간부분의 자주규제 제도를 중용하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연구내용인 “V. 인터넷과 콘텐츠 규제”에서는, 네트워크범죄의 심각화에 따른 규제가 도입되었음을 검토하였다. 1999년 8월 ‘부정액세스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00년 ‘특정상거래법’에 의해 인터넷 판매에 있어서의 규제가 도입되었다.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과 같이 책임주체의 책임을 명확화 혹은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과 콘텐츠 규제를 위해 새로운 입법의 도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섯 번째 연구내용인 “VI. 인터넷 저작물의 유통”에서도 정보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위한 제도가 법제화 되고 있다. 여기서도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은 저작권침해와 ISP의 법적책임의 명확화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보완하는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곱 번째 연구내용인 “VII. 인터넷상의 위법·유해정보 대책”에서는, 인터넷상 새로운 규제수단 등이 도입된 것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유해환경을 억제하기 위한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의해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법규제 등이 있고 앞으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법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위법·유해정보에의 법적 대응을 규제하기도 하고,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과 같이 책임주체의 책임을 명확화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라. 향후 과제에 대한 건의

일본의 인터넷 법제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정비에 있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인터넷의 이용으로 각국은 그 나라 그 사회에 적합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규제수단이 법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규제수단은 ① 기존법으로 규제할 수 없었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제도의 정비를 하는 것이였었고,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②네트워크에서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일본은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진입규제의 완화와 업무규제의 완화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에 관한 규율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사후규제에 역점을 두면서 경쟁원리를 전제로 이용자의 이익확보와 향상을 위한 규율 마련이 유효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가 널리 국민에게 이용되고 있고 이용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그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지의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단체 등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용자의 시점에서 각 기관이 연계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도 인터넷 규제 법제는 현실세계에서의 행위 규제법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 세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예: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간분야).

인터넷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위한 규제법제가 직접적으로 실효성, 유효성을 갖도록 정비해야하며 또한 그 인터넷 규제법제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 앞으로의 기술 진보에 맞추어 지속적인 추행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2장 인터넷기반서비스 정책방안 연구

제1절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1. 개인 웹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43%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67%가 하루 1회 이상 또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인 웹미디어를 이용함에 따라 블로그, 미니홈피 등 개인 웹미디어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어졌다. 개인 웹미디어의 유형으로는 이용동기에 따라 관계지향형(친목도모 등), 정보생산형(지식습득 및 정보제공 등), 복합형(관계지향형과 정보생산형의 중간)이 있으며 운영 형태에 따라 서비스형 블로그(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로 우리나라의 85.5%)와 설치형 블로그(직접 블로그 저작도구를 이용)로 나눌 수 있다.

2. 개인 웹미디어의 특징

개인 웹미디어는 기존의 포털 및 단순 정보제공사이트와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블로그 운영자인 블로거가 기존 언론의 발행에 준하는 정보 생산 기능을 가짐에 따라 인터넷공간에서 일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블로그의 네트워킹 기능을 통해 정보의 확산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생산과 이용구조가 수평적인 분산형 미디어이기 때문에 중앙 통제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블로그의 특징 및 기능은 블로그의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권리침해 현상으로 인한 정책 움직임을 촉발 하였다.

해외의 개인 웹미디어 관련 정책 움직임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바이럴마케팅으로 알려진 블로그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방거래위원회가 해

당 기업과 블로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의 경우 악성댓글을 집중해서 게시하는 블로거들을 경찰이 집중 수사하여 대거 적발하였다.

3. 개인 웹미디어 관련 제도와 법률적 쟁점

주요 개인 웹미디어의 법률적 쟁점으로는 권리침해 분쟁조정,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임시조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 청소년 보호, 개인 웹미디어의 상업적 이용 등이 있다. 국내 블로그 전문가 FGI('09년 4월 17일 NIA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털 블로그, 메타 블로그, 블로그 저널리즘 업체 등 전문가 6인 참여) 결과를 통해서도 이러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저작권 이슈는 음원에서 시작된 저작권 문제가 영화, 사진,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거의 전 분야의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와 동시에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두 번째로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슈로는 이 임시조치에 대한 소명권의 부재, 블로그와 기존 미디어에서 생산된 콘텐츠에 대한 차별 발생 및 임시조치를 신청하는데 소명조건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이슈로는 인터넷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기획에 엄청난 장애요인이며, 뉴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개인 웹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먼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정요구범위의 명확화 및 대상을 제한하는 등 현행 심의제도 개선 및 '민간기구형 ADR'로 권리침해 조정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개인 웹미디어 운영자의 '자가 내용등급표시 코드' 도입 및 인터넷 시민성 교육 실시를 통한 이용자 책임성 제고와 건전한 정보유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ISP와 이용자간의 약관개선, 게시물 처리에 대한 ISP의 면책요건 마련 등의 이용자 피해

구제 및 분쟁처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개인간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기초연구와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영역, 기업영역, 사회영역 등이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가치를 보호·증진하는 거버넌스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제2절 1인 인터넷 기업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으로 잇따른 중소기업의 폐업과 실업률 증가로 국내 경제 성장이 주춤한 현 시국에서, 2000년도 미국이 벤처의 몰락으로 실업난이 가중되었을 시기, 지식전문가(인터넷, 디자인분야 등)의 나홀로 창업 즉, 1인 기업의 탄생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1인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사례가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 경제 시국에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식기반 정보사회로의 도래와 사회의 유연한 기업구조에 대한 요구 등으로 1인 기업(프리랜서)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범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1인 기업에 대한 정의와 경제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이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어 정부에서도 산업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및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다양한 1인 기업 중 인터넷 강국인 국내 특성을 반영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의·혁신적인 1인 인터넷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1인 인터넷기업 현황 파악이 전무한 관계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1인 인터넷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1인 인터넷기업 운영실태 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1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중에 있으나 국내는 엄연히 1인 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적 관심 등이 미비하여 1인 기업 정의와 산업분류 및 체계적인 사업체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본 연구 주제인 1인 인터넷기업에 대한 범주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전체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입에 대한 과세현황도 미비한 실정이고 기본적인 정부 지원정책의 수혜에 대한 상황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1인 인터넷기업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외 1인 인터넷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도출과 1인 인터넷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 접근방식은 국내외 1인 기업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1인 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정립된 개념을 도출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1인 인터넷기업에 대한 정의와 세부 업종을 분류할 것이다. 또한 1인 인터넷기업에 대한 명확하고 정립된 개념을 가지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외 1인 기업 현황과 정책지원 및 창업사례 파악하여 국내 1인 인터넷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도출과 1인 인터넷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세부 지원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1인 인터넷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포괄하는 종합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법·제도부문, 수용태세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부문, 대내외 홍보 부문 등 3개 부문별 추진전략 도출과 세부 지원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결론적으로 1인 인터넷기업 육성이 창의·혁신 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 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라 생각한다. 1인 인터넷기업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

식정보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정보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1인 인터넷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국가차원의 비전과 발전전략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야이므로 정부는 국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써의 역할,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1인 인터넷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인 인터넷기업 창업 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정부에서는 1인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포함될 내용은 1인 기업 정책국 설치 및 각 부처별로 1인 기업과 신설, 지방청에 1인 기업 담당관을 배치, 지자체별 '1인 기업 도우미센터'를 관리, 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자금 지원 대상을 1인 기업까지 확대적용, 온라인쇼핑몰 1인 인터넷기업에 대한 통신판매 허가제도 강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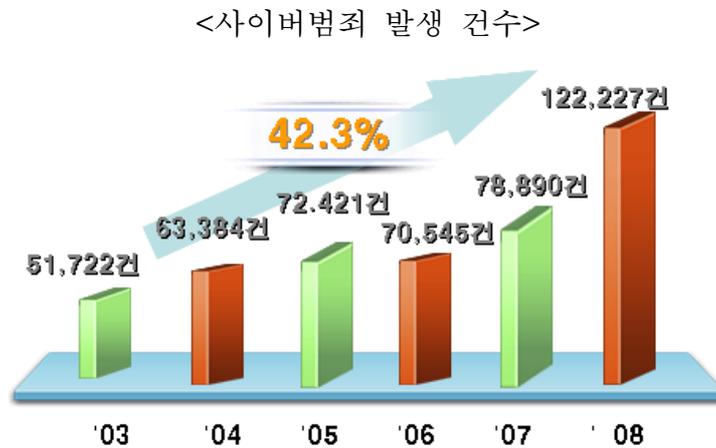
그리고 현재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세분화, 전문화한 1인 기업 전문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창업 경영컨설턴트 교육 및 상담사 자격(민간), IT 컨설턴트를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변경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1인 인터넷 창업과 관련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직업 훈련하여 1인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중소기업 및 1인 기업 간 수·발주를 유도하거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인 기업과 타 기업 간 불공정 거래 사례를 적극 해결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성공적 사례를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속적 1인 인터넷기업 창업 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프리랜서의 개념에서 인터넷과의 접목으로 보다 진보되고 다양한 1인 인터넷기업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1인 인터넷기업을 활성화를 통한 인터넷 기반 일자리 창출로서 청년실업 및 유휴 전문 인력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현황 및 시사점

1.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1%(이용자수 3,536만명)에 달하며 10대(99.9%), 20대(99.7%), 30대(98.6%)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국민의 주요 정보습득 수단으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 확대와 함께 인터넷상에서는 명예훼손, 불건전 정보 유통 등 다양한 역기능도 증가하였다. 실제로 인터넷사기, 사이버폭력 등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03년 51,722건에서 '08년 122,2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자료 재구성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에게만 집중되었던 피해는 불특정다수로 확산되었고 연예인, 정치인 등 일부 공인에게 집중되었던 피해가 일반 인터넷 이용자로 확대되면서 심각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인터넷서비스 관련 공적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율규제를 통해 자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서비스 기업은 자체 모니터링 조지를 운영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인터넷 역기능을 빠르게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의 정의 및 유형

자율규제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스스로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개인·기업·산업계 등이 규제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만든 기준 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며,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Price & Verhulst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유형을 자발적, 강요적, 승인적, 강제적 자율규제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율규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Ovum report는 인터넷 콘텐츠 중심의 자율규제 유형을 분석하였고, J.Black은 헌법적 관점에서 광의로 분류하였으며, Boddewyn은 광고에서의 자율규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여러 학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소 명칭은 상이하나 Price & Verhulst의 자발적, 강요적, 승인적, 강제적 유형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해외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유형 분석

앞에서 살펴본 Price & Verhulst의 자발적, 강요적, 승인적, 강제적 유형으로 해외 주요국의 자율규제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국가별로 특정 자율규제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한 국가에서도 서비스의 특징 및 자율규제의 형태·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의 개입정도가 낮은 편이지만 정부와 긴밀한 관계 및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 해외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기구 >



4. 국내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유형 분석

우리나라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기구의 대부분은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에 가깝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 경우 CP(Content Provider)사업지원, 콘텐츠자율심의 등 산업 활성화와 규제의 조화를 이룬 자율규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인터넷광고 업계 스스로 책임을 다하여 인터넷광고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전·사후심의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자발적 자율규제 유형에 가장 가까우며, 이용자가이드라인 제공 및 포털사 공동의 질서와 규칙 제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유무선 전화결재 이용자보호협회의 경우 설립 초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다른 기관과는 다소 차이가 나며 승인적 자율규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협의회 스스로가 알아서 자율규제활동을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공동규제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협의회 내에서 처리하지 못할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정부기관 및 사법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자율규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만한 근거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우며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규제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자체 가이드라인을 신뢰할만한 기준이 불명확하다. 또한, 자율규제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적극적 참여에 대한 보상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독려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5.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아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 예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구 또는 사업자는 면책, 인증마크 취득, 정부정책 사업 참여시 우대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FSM은 기업이 자율규제 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청소년 미디어 보호 국가 협정에 따라 청소년미디어 보호 관리자 배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율규제기구와 정부가 협력하여 자율규제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산업계·이용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 국경 없는 글로벌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서비스 자율규제 기구의 국제 협력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4절 인터넷 이슈 현안과 전망

1. 전문가가 진단한 인터넷 비즈니스 이슈

'08년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이슈의 현안 및 전망 분석을 위해 학계·업계 등 인터넷 관련 전문가 41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은 인터넷 정책 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전문가의 서면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09년 한 해 동안 TV, 신문, 인터넷, 논문 등에서 논의된 인터넷 관련 키워드 30여개를 수집하여 1차적으로 상위 10개의 이슈를 선별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인터넷포털, 소셜미디어, 사이버테러 등의 이슈가 선정되었다.

< 키워드로 본 인터넷 주요 이슈(1차 조사) >

인터넷포털	위젯	소셜미디어	Ajax	크로스미디어	인터넷광고
Open API	클라우드소싱	Mash up	인터넷쇼핑	사이버테러	SOA
클라우드컴퓨팅	소셜네트워크	개인화	개인정보노출	웹3.0	인터넷검열
자율규제	인터넷중독	인터넷윤리	가상세계	시맨틱웹	인터넷신뢰도
인포데믹스	u-Health	Telematics	IPTV	인터넷전화	무선인터넷

2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로 선별된 10개의 이슈를 각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비교(이원비교)를 통해 요인간 중요도 및 시급성을 측정하였으며, 본 설문에서 ‘중요도’란 이슈 및 트렌드의 사회적 파급력(Impact)을 의미하며, ‘시급성’이란 신속한 대응 또는 지원이 필요한 이슈 및 트렌드를 의미한다.

설문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인터넷 분야의 주요 이슈 및 트렌드로 개인정보노출, 사이버테러, 자율규제, 소셜미디어, 인터넷윤리 등이 선정되었다. 중요도와 시급성의 순위별 이슈가 큰 차이 없이 나타났으며, 이는 중요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참고로 2008년 인터넷 관련 이슈 및 트렌드로는 ①개인정보보호, ②인터넷저작권, ③IPTV, ④모바일, ⑤인터넷광고, ⑥인터넷포털, ⑦사이버테러, ⑧사이버모욕죄, ⑨인터넷정치, ⑩그린IT가 선정 되었었다.

< 인터넷 관련 이슈 및 트렌드 Top 10 >

중요도		시급성	
순위	이슈	순위	이슈
1	개인정보노출	1	개인정보노출
2	사이버테러	2	사이버테러
3	자율규제	3	자율규제
4	소셜미디어	4	인터넷윤리
5	인터넷윤리	5	소셜미디어
6	소셜네트워크	6	무선인터넷
7	인터넷포털	7	소셜네트워크
8	무선인터넷	8	IPTV
9	인터넷검열	9	인터넷포털
10	IPTV	10	인터넷검열

2. 인터넷 5대 핵심 이슈 분석

가.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노출 문제

작년 한해 이슈였던 대량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이어, 인터넷포털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가능성 등 개인정보의 관리차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일부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의 회원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및 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 소홀로 일부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상 무수히 많은 정보 중에 선별적으로 가장 가까운 검색결과가 이용자에게 제시된다. 이때, 검색어에 따라 특정인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지, 학력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무엇이든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뜻의 '구글링(googling)'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는 타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조회 및 조작 하는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며 매우 특히,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의 노출시 인터넷금융사고,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

나.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 문제

과거 일반인에게 특별한 목적 없이 해킹하는 차원을 넘어 최근에는 기업의 산업기밀, 정부기밀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테러가 보다 지능화·집단화되고 있다. 사이버테러란 광의로는 주요조직 및 정부기관의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기밀정보 등을 해킹 및 파괴하여 순식간에 모든 국가 주요기능을 정지 및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개인의 PC 등에 접근하여 바이러스, 스팸메일 등으로 공격하여 일시·영구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정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26개 기관이 DDoS공격⁴⁾으로 동시에 마비되는 등 국가차원의 문제로 대두되었으며('09.7.7), 일반 기업도 사이버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⁵⁾ 이제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개인 보안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한 국가 현안이다.

다. 인터넷서비스의 자율규제 활성화 필요성 대두

인터넷서비스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적 문제해결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여 진다. 인터넷 활용률의 증가와 확산은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였으며 이용의 편리성, 산업의 활성화라는 순기능 뒤에 명예훼손, 인터넷사기 등 다양한 역기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분쟁 등의 사건에 시의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관련 기업·협회 등 국내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노력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라.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등장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활성화는 오늘날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과 변화를 이끌어 오는 핵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웹2.0 시대에서 미디어 트렌드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참여·공유·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소셜미디어란, 블로그·미니홈피 등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사진 등을 게재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셜미디어는 정부정책

4)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란, 비정상적으로 접속건수(트래픽)를 늘려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

5) 컴퓨터보유사업체(158만여개) 중 바이러스 등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12.5%(20만여개)로 전년대비 17.6% 증가, 네트워크구축사업체(65만여개) 중 서비스 거부 공격(DDoS) 피해를 경험한 사업체는 0.8%(5천여개)로 전년대비 99% 증가(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09정보화통계집)

의 홍보 등 정치적 활용수단으로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도 핵심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마. 인터넷상 비윤리적인 행위 증가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비례하여 인터넷윤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부족으로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댓글(악플), 인터넷사기 등 인터넷 역기능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81.1%는 다른 이용자에게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83.8%는 인터넷에서 규칙·법률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정보예절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⁶⁾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 다운로드, 인신공격적 언어사용 등 다양한 정보일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등은 교육(정보윤리특강, 정보문화교육, 교원 교육 등), 캠페인(I-CLEAN, u-Clean, 선플운동 등)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인터넷 5대 핵심 이슈 진단 및 전망

가.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노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는 짧은 시간 내에 무수히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더 심각하며 인터넷상에서 완전한 개인정보 노출 차단 및 제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상 개인정보노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09. 11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정보 노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기업·이용자 측면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터넷상

6) 행정안전부, 2008년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

무분별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기업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즉시 이를 삭제 조치함은 물론 개인정보 관리자의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기업 내부 보안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에게 노출된 정보에 대한 공지를 통해 본인의 정보가 어떠한 경로에서 노출되었는지 알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필요이상으로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입한 사이트, 커뮤니티 등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스스로 개인정보 노출 차단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1인 미디어의 발달로 개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가 중요해진만큼 1인미디어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나. 사이버테러 관련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현재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원), 민간부분의 업무는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분의 업무는 국방정보전 대응센터(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사이버침해사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센터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일관되고 체계적인 보안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사이버 보안 훈련 등을 통하여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방안마련도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보안의식 고취 및 자발적 대처방안 마련 등 시장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비 및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사이버테러의 발생 우려가 제기된 만큼 아이폰 출시 등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 및 모바일 인터넷 활용률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사이버테러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곧 자율규제의 본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어렵다. 하지만 자율규제 참여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면책, 인증제,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으로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기업은 정부가 최소한의 법적 규제 범위를 제시하면, 스스로 한계를 넘지 않도록 자발적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이 동시에 수반되는 건전한 자율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업이 산업 전반이나 사회적 측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 함께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전반의 소통양식 변화 가속화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이 더디고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투자 등을 통해 신규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비스화 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정부의 지원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및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측면에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수익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SNS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한 신뢰성 없는 정보의 유통, 타겟광고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마. 대국민 인터넷윤리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노력 필요

웹2.0 시대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인터넷상 자유로운 참여·공유·개방의 문화가 확립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인터넷 이용자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적극적인 주체로 변화하였지만 인터넷윤리 측면에서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다양한 역기능 해소 차원에서도 이용자의 윤리의식 확립이 중

요하며 단발적인 교육, 홍보,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윤리의식 전환 계획 수립 하는 등 정부가 인터넷 윤리의식 확립에 앞장서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제3장 인터넷서비스 정책연구 대외협력

제1절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포럼 운영

1. 배경 및 목적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인터넷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서비스의 지속적 진흥을 위한 산업계 정책수요 발굴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산업계 실무자 중심의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인터넷업계 이슈를 공유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공동 모색하였다.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 포럼은 인터넷에 기반한 서비스 산업진흥 관련 정책수요 발굴, 인터넷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인터넷 산업계 의견수렴 및 사업자, 정부, 연구계 등 유관기관 협력기반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었다.

2. 포럼 구성 및 운영

이 포럼은 인터넷 포털, 인터넷 게임, u-헬스, 전자상거래, 중소 CP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하였다.

월 1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최신의 산업계 이슈를 발표 및 토론하고 정부의 정책사항 중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 주요내용

'09년 4월부터 '09년 11월까지 총 8회 개최하였으며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도, 인터넷 산업의 전망, 스마트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활발히 운영되었다.

<09년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포럼 발제목록>

구분	주제	발제자
제1차 (4/30)	2009년 인터넷 산업전망과 서비스 트렌드	백진주 팀장 (코리안클릭)
제2차 (5/20)	‘디시인사이드와 커뮤니티’ 발제	조현경 본부장 (디시인 사이트)
	‘IDC, 가상화 서비스 및 최근 보안 이슈’ 발제	최상연 과장 (후이즈)
제3차 (6/17)	스마트폰에서의 인터넷컨텐츠 서비스	박도성 이사 (핸드모바일 닷컴)
제4차 (7/15)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법제도 현황	차재필 선임 (NIA)
제5차 (8/19)	트위터와 소셜미디어	류한석 이사 (스마트플레이스)
제6차 (9/16)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개선 방안 연구결과 의견수렴	차재필 선임 (NIA)
제7차 (10/21)	국내 블로그 마케팅의 유형과 새롭게 대두되는 개인 아이덴티티	박성호 이사 (세이하쿠닷컴)
제8차 (11/18)	U-헬스케어의 동향	최준민 팀장 (유비케어)

<인터넷서비스 산업정책 연구포럼>



제2절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

1.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비즈니스 및 서비스의 미래 성장동력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발전협의회(KIGA:Korea Internet Governance Association)」가 2009년 11월 창립되었다. 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모여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의견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하고자 「인터넷발전협의회(KIGA)」를 창립한 것이다. 「인터넷발전협의회(KIGA)」는 세분화된 이슈의 체계적 논의를 위해 산하에 '인터넷법·제도 포럼', '인터넷비즈니스포럼', '인터넷주소정책포럼'을 운영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중 비즈니스와 주소정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고 법·제도포럼은 인터넷 법제도 분야의 역량을 갖춘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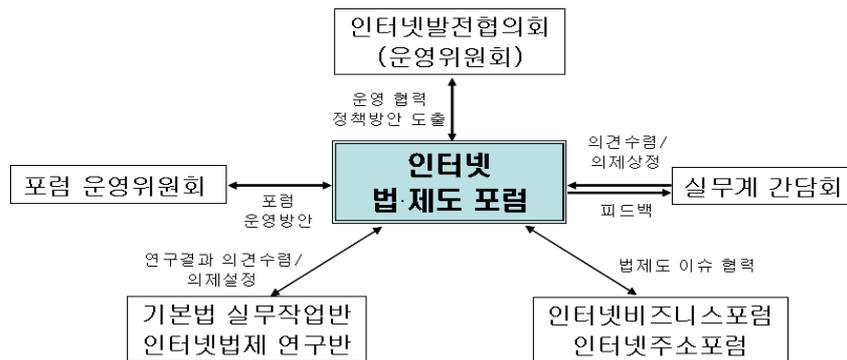
'인터넷법·제도 포럼'은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이슈 및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주요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는 등 한국 인터넷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 창출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합리화 방안 및 인터넷 신뢰도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다.

2. 포럼 구성 및 운영

'인터넷법·제도 포럼'은 학계, 업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09년 10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어 '09년 11월 포럼의 상위 협의회인 「인터넷발전협의회(KIGA)」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인터넷 법·제도 포럼의 본격적인 운영은 2010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포럼은 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업체 실무자 중심의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법제도 관련 이슈 및 현안의 분석·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부 정책 건의 및 반영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활용될 것이다.

<인터넷 법·제도 포럼 운영체계>



3. 주요내용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연구의 세부과제 분석 및 검토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입법추진 지원을 주요 포럼의 의제로 설정할 것이다. 산업기반강화(인프라, 서비스, 공정경쟁, 정책지원방안 등), 이용자보호(소비자보호, 분쟁해결 등), 정보보호/콘텐츠(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내용규제, 저작권, 자율규제 등) 분야가 세부 논의 내용일 될 것이다. 또 축적된 연구 내용 및 자료 등을 토대로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포럼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외부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것이다. ‘인터넷 법·제도 포럼’은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인터넷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인터넷 법·제도 포럼 창립총회>



제3절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연구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1.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인터넷 이용의 확산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고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로의 진출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서비스별 개별입법으로 규제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결여 되고, 다양한 신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출현에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규서비스의 도입 지연이 우려되는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규율 법제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인터넷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조의 법제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인터넷의 종합적·균형적 발전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적 지원 강화를 기조로 하는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개선 연구결과를 공개 및 홍보하고 산업계, 학계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세미나 개요 및 프로그램

- 일 시 : 2009년 9월 10일(목) 14:00 ~ 17:30
-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강당
-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 주 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법학회

<세미나 일정 및 내용>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20	<p style="text-align: center;"><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김성태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 축 사 : 황철증 국장(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소재선 회장(한국인터넷법학회) 	<p>사회 :</p> <p>지성우 교수 (단국대)</p>
14:20~15:40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방안 - 이규정 연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과제 - 박영철 교수, 용인송담대 	<p>좌장 :</p> <p>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p>
15:40~16:00	휴 식	
16:00~17:30	<p style="text-align: center;"><종합토론 및 질의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성욱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 김지욱 변호사(NHN) - 류한석 이사(레몬컨설팅) - 이상직 변호사(KT) - 가정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p>좌장 :</p> <p>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p>

다. 주요내용

1) 인터넷기반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법제정비 등은 매우 중요함
- 현재 인터넷기반서비스 규율법제는 비체계적, 기술의 진화에 대한 법적 대응의 경직성, 규율의 한계 및 규제의 중복·흠결·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음
- 인터넷기반서비스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육성·지원정책 수립의 용이성 확보, 최소한의 시장진입 절차 및 서비스의 개시와 법률의 흠결 최소화, 인터넷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방안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부시책과 법제는 공정경쟁, 자율과 책임 제고, 서비스 이용의 신뢰성 강화 원칙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주요 법제개선 이슈 >

구분	주요내용
공정경쟁 환경조성	시장진입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세스 정립과 진입장벽 제거,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재검토 및 합리적 개선과 자율적 규제 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직·간접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

3)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과제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이용확산에 따라 유해정보유통,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전자상거래 피해 등 다양한 역기능 발생
-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도 마련 필요

< 주요 법제개선 이슈 >

구분		주요내용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보호,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금지, 동의방법의 형식화, 주요개인정보의 보호, 이용자의 정보보호 책임문제, 개인정보 파기 문제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사업자의 공정한 정보의 제공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제공, 표시·광고의 공정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정보비교서비스, 저장정보의 보호, 불법정보 및 청소년 유해정보의 제한, 불법·유해상품의 광고제한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약관의 게시 및 설명, 이용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 확인, 조작실수 등의 방지책 마련, 지급·결제의 안전성 확보 등
	분쟁조정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제도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2.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 공청회 개최

가. 추진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법률이 20여 가지나 되어 법률간 규제의 중복, 정책의 일관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세계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의 발전이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개선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대내외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편성하여 수십차례가 넘는 연구회의와 학계, 산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며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 기본법률(시안)'을 마련하였다.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 기본법(안) 공청회는 산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나. 공청회 개요 및 프로그램

- 일 시 : 2009. 12. 3일(목) 14:00 ~ 16:30
-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대강당
-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
- 주 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청회 일정 및 내용>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20	<p align="center"><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김성태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 환영사 : 형태근 상임위원(방송통신위원회) ■ 축 사 : 오해석 대통령 IT특별보좌관 	<p align="center">사회 :</p> <p align="center">박영철 교수 (용인송담대)</p>
14:20~15:20	<p align="center"><주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자율성 제고 - 이규정 연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공정성·신뢰성 보호 -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p align="center">사회 :</p> <p align="center">박영철 교수 (용인송담대)</p>
15:20~15:30	휴 식	
15:30~16:30	<p align="center"><종합토론 및 질의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성욱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 정상조 교수(서울대학교) - 김재광 교수(전문대학교) - 김유정 교수(호서대학교) - 김현성 이사(NHN) - 이병선 본부장(Daum) - 박주돈 부사장(디시인사이드) 	<p align="center">좌장 :</p> <p align="center">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p>

다. 주요내용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시안) 공청회는 정부 및 산업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오해석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이 참석하여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인터넷기반서비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공청회 발제 주요 내용은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마련 및 시책수립,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사업자 신고의 자율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인센티브제공, 인터넷 매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 이용자 분쟁조정접수의 일원화 등 인터넷기반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자율성 제고 측면과 인터넷기반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시안) 주요내용>



또한 정부, 학계, 산업계의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토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인터넷 분야의 기술의 진화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
- 현행 인터넷관련 법제는 급성장한 인터넷 산업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음
- 통합법이나 개별법이나 하는 문제보다는 인터넷 매체 및 시장질서의 특수성이 얼마만큼 잘 반영되었는가가 관건
- 신규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과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

- 인터넷 관련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인터넷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는 환영
-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 법안이 다양한 법률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성공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협의체 구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인터넷기반서비스 기본법 공청회>

